

2020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안내

“훈련기간 중 최대 2천만원까지 장기 저리(연1%)로 생계비를 대부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하여 대부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소득요건, 대부한도액, 지원기간은 7.1.~12.31.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대부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중이거나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상요건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쿠팡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소득요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 대부한도액

월별 최소 50만원~최대 300만원까지(1인당 총 한도 2천만원)
※ 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 한도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

▶ 대부금지급

- 대부은행 : IBK 기업은행
- 훈련수강 기간 동안 월별 분할대부
- ※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대부금리

연 1.0%
※ 신용보증료 연 1.0%별도 부담, 대부실행시 선공제

▶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 불가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자의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소득요건 관계없이 인당 총한도 3,000만원까지 대부가능

대상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훈련과정으로서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지원 훈련과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이상인 경우 포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을 포함(이 경우 남은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인정)

※ 대상훈련과정 확인

-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신청서 접수방법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 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61개소)
※ 팩스접수는 불가

대부신청서 처리절차

대부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 1회차 대부실행(결정일 부터 15일 이내) ▶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분할 실행

※ 1회차 대부실행을 위해서는 IBK기업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계좌가 없는 경우 신용보증 처리 후 은행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 ▶ 가구원(본인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대부금리

연 1.0%

※ 신용보증료 연 1.0%별도 부담, 대부실행시 선공제

대부금지급

• 대부은행 : IBK기업은행

• 훈련수강 기간 동안 월별 분할대부

※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대부한도액

월별 최소 50만원~최대 300만원까지
(1인당 총 한도 2천만원)

※ 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 한도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 불가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자의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소득요건 관계없이 1인당 총한도 3,000만원까지 대부가능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 ▶ 가구원(본인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자세한
사업안내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콜센터

1588-0075

<공단 직원은 업무 처리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용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일체의 식사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습니다.

홍보-2020-0031

2020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안내

훈련기간 중 최대 2천만원까지 장기 저리(연1%)로
생계비를 대부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하여
대부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소득요건, 대부한도액, 지원기간은 7.1.~12.31.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신청자격

대부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중이거나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상요건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쿼터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소득요건

공 통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 건강보험료 납입액 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대상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훈련과정으로서 3주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지원 훈련과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이상인 경우 포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 (3주미만)의 훈련을 포함(이 경우 남은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인정)

※ 대상훈련과정 확인

-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접수방법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방 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61개소
※ 팩스접수는 불가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 1회차 대부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분할 실행

※ 1회차 대부실행을 위해서는 IBK기업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계좌가 없는 경우 신용보증 처리 후 은행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